

(사)서울특별시자원봉사센터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2005
----------	------

2017년 9월 6일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자 : 서울특별시장
- 나. 제안일 : 2017년 8월 14일
- 다. 회부일 : 2017년 8월 16일
- 라. 상정일 : 제276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2017년 8월 30일 상정·의결(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행정국장 김인철)

가. 제안이유

- 서울시에서는 시민이 주도하는 자원봉사 활성화와 자원봉사를 통한 공공서비스 참여 및 이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을 위하여 2006년 (사)서울특별시자원봉사센터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음.
- 이에 자원봉사 민관협력강화를 위한 서울특별시자원봉사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2018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서울특별시자원봉사센터 출연 여부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사전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가. 출자·출연 개요

- 대상기관 : (사)서울특별시자원봉사센터
- 관련법령
 - (공통)법령 : 「민법」(제32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개별)법령 : 「자원봉사활동기본법」
 - 조 례 : 「서울특별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 출연금액 : 2,754,878천원

나. 주요사업

- 자치구자원봉사센터 지원 및 지역단위 자원봉사 역량 제고
 - 자치구센터 지원 : 지역단위 소모임 육성·연계 및 시·구 공동협력 체계 강화
 - 지역활동 역량강화 : 지역거점 상담가 및 아파트 리더 양성·심화 교육
 - 자원봉사 관리자 및 시민리더 역량강화: 학습플랫폼 및 자원봉사 관리자 아카데미 운영
- 소통·공유·협력을 통한 자원봉사 플랫폼 구현
 - 온라인 플랫폼 운영 : 시민 눈높이에 맞는 시민 중심의 자원봉사 소통 공간 운영
 - 민간자원 연계 : 공공기관·기업·자원봉사단체 간 네트워크를 통한 활동지원
 - 자원봉사 관리·운영 기능 강화 및 지역공동체 중심의 재난안전 활동 지원

다. 출자·출연의 필요성

- 자원봉사의 체계적 발전 및 민간 주도 자원봉사활동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설립한 서울특별시자원봉사센터의 운영을 지원하고,
- 자원봉사활동의 민·관 파트너십 구축을 통하여 자원봉사활동을 범시민운동으로 승화·확산하기 위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한태식)

가. 동의안 개요

-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제18조 제3항)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변경('14.5.28.개정, '16회계연도부터 적용) 되어,¹⁾ 2018년 사단법인 서울특별시자원봉사센터 출연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하여 제출된 것임.
- 동 센터는 관련법령(「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19조 및 「서울특별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제4조²⁾)에 따라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하고, 자치구 자원봉사센터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광역 자원봉사센터」로서 운영되고 있음.

나. 서울특별시자원봉사센터 설립 등 현황 및 사업 실적

- 서울시자원봉사센터는 2006년 1월에 설립되었고, 인력은 24명으로 전년 대비 1명이 증가했으며, 2017년 출연금은 26억 2천 1백만원 규모이나, 2018연도 출연금(예정) 규모는 약 27억 5천 5백만원(5.1%p 증가) 수준임.

〈연도별 출연금 현황〉						
(단위:백만원)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예정)
1,830	2,271	2,282	2,447	2,524	2,621	2,755

1)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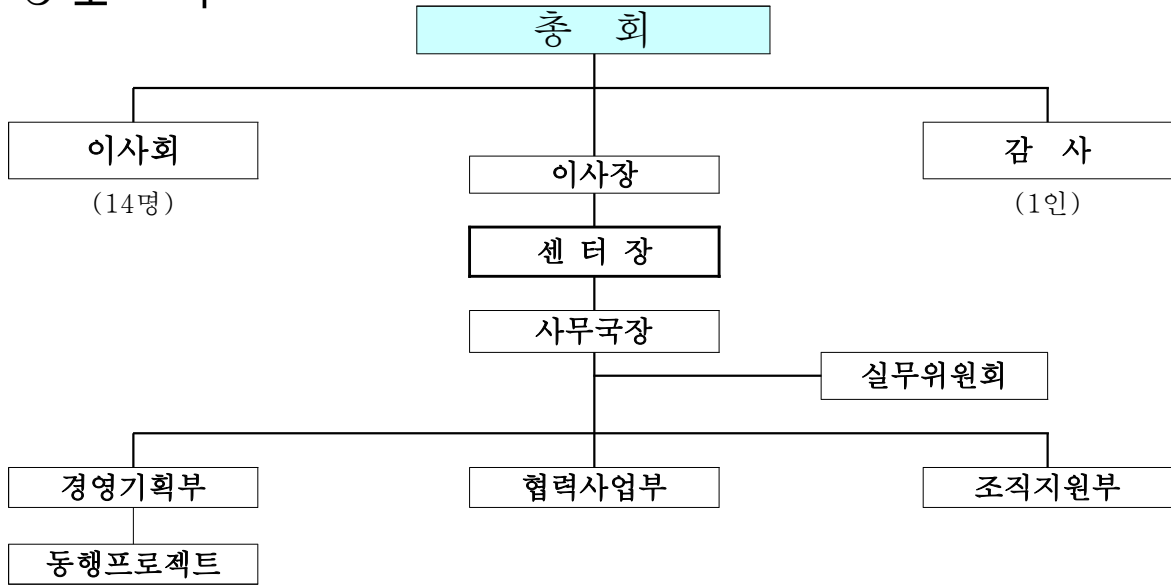
2) 제4조(설립 및 사업 등) ①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민법」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사단법인으로 서울특별시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립한다.

설립 개요 <서울시자원봉사센터 현황>

- 기관명 : (사)서울특별시자원봉사센터
- 설립형태 : 사단법인(민법 제32조의 비영리법인)
- 소재지 :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163 서울신용보증재단 3층(8월말 이전예정)
- 설립일 : 2006. 1. 18.

조직 및 인력

○ 조직



○ 인력

(2017. 08. 17 현재)

구분	계	센터장	사무국장	부장	팀장	대리	주임
현원	24	1	1	3	5	7	7

※ 정원 외 인력 14명 별도운영 : 동행프로젝트 7명(서울사·탁사법), 교육/전산코디네이터 2명, 전산연구직 2명, 평창 3명

○ 서울시 자원봉사센터는

- 2017년도 주요 사업으로는 일상에서의 자원봉사 문화 확산을 위한 ‘시민주도형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자치구 단체 프로그램 공모 지원사업’, ‘시민이 직접 참여하고 만들어 가는 온라인 플랫폼’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 시민주도형 프로그램 개발 보급 : 22개구, 44개 사업, 199,484천원 지원,

자치구 단체 프로그램 공모사업 : 136개 단체, 104,718천원 지원

시민이 직접 참여하고 만들어가는 온라인 플랫폼 운영 : 월 평균 방문자수 5,092명

- ‘자원봉사 관리자 전문성 강화교육’, ‘교육콘텐츠 개발 및 보급’, ‘예비 자원봉사 관리 전문가 육성’과 함께

※ 관리자 전문성 강화교육 : 관리자아카데미(11회, 205명), 신입관리자교육(1회, 22명), 자원봉사자 인권교육 콘텐츠 개발을 통한 교육 : 16회 412명, 예비 자원봉사 관리 전문가 육성 : 20개 기관 21명 배치(서울 뉴딜일자리 사업 연계), 기타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을 지원하는 ‘어린이가족봉사단’ 운영(6개구) 및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 협업을 통한 연계사업(5개구) 등 운영

- ‘기업-민간단체 협력 강화를 통한 연계와 협력의 네트워크 구축’ 등의 사업도 추진하고 있음.

※ 기업자원봉사 연계(기업 지정기탁금 : 134백만원) : 컨설팅(8회), 교육(5회), 맞춤형 프로그램 진행(16회), 협력기반 확대 : 전북지역 자원봉사활동(볼런투어) 지원 등 11회, 1,465명 기타 자치구센터장 연구세미나 및 회의(9회), 자치구 순회방문 간담회(25회), 실무자 연합워크숍(1회), 관리자 재충전 프로그램(1회) 등을 추진

〈 자원봉사센터의 주요사업 〉

1. 센터의 운영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자치구의 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단체(그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학교 및 기관에 대한 협력·지원
3. 자원봉사를 필요로 하는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을 말한다),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 및 개인(이하 “자원봉사수요자”라 한다)의 협력·지원
4. 특별시·광역시·도 지역의 기관·단체들과의 상시협력체계 구축
5. 자원봉사관리자 및 지도자의 교육훈련
6.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7. 자원봉사 조사 및 연구
8. 자원봉사 정보자료실 운영
9. 그 밖에 특별시·광역시·도 지역의 자원봉사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 「서울특별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제4조

다. 서울특별시자원봉사센터의 출연 필요성 검토

- 자원봉사는 민간의 힘을 빌려 사회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으로, 최근 들어 증가하고 있는 청년실업, 빈곤, 고령자, 아동양육 등의 문제를 민간의 힘으로 자조적으로 해결해 나감으로써 국가 중심의 문제해결을 보완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하겠음.
- 또한, 최근 재능기부 등 다양한 형태의 자원봉사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라 할 수 있으며, 다양한 자원을 가진 민간의 자원봉사는 더욱 활성화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서울시자원봉사센터는 서울시 출연기관으로 고시되지 않았으며, 출연기관으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어 동 센터에 출연금을 출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근거가 미흡한 상황임.
- 「서울특별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는 동 센터에 ‘운영비 및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동 ‘출연’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라고 하겠음.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자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
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5.28.>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해
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신설 2014.5.28.>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서울특별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13조(센터지원) ① 시장은 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운영비 및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나 「민법」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되어있으며(「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3³⁾), 출자·출연 기관 관련 일반법인
동 「법」에는 ‘「민법」에 따른 사단법인’은 동 「법」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음.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과 대상 사업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액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
한다)와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나 「민법」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
다.

1. 문화, 예술, 장학(장學),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사업

3)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3 2002.3.25.제정, 2013년 3월 24일 폐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2014년 3월 24일 제정)

2.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하는 비율을 산정할 때에 그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출자·출연 기관이 출자하거나 출연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한 것으로 본다.

③ 출자·출연 기관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설립 목적
2. 주요 업무와 사업
3. 출자 또는 출연의 근거와 방법
4. 그 밖에 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제2조(적용 대상 등) ①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이하 "출자·출연 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이 경우 출자기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산정 기준에 따라 계산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②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지방공기업법」 제2조, 같은 법 제3장 및 제4장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지방공기업가. 지방직영기업
나. 지방공사
다. 지방공단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3.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을 회원으로 하면서 지방자치단체 간 발전과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복리증진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기관
4. 「민법」에 따른 사단법인

③ 지방자치단체의 지분이 100분의 50 미만인 출자기관에 대해서는 제9조, 제11조, 제12조,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 제18조제3항·제4항, 제19조 및 제22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6.5.29.>

1. 지방자치단체가 최대지분을 보유하고 지분의 분산도(分散度)로 보아 주주권 등의 행사에 따른 기관 지배가 가능한 경우
2.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조례 또는 정관에 따라 해당 기관의 기관장 또는 이사회 구성원의 과반수의 임명(승인·제청 등을 포함한다)에 관여하는 경우
3.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조례 또는 정관에 따라 해당 기관의 예산 또는 사업계획을 승인하는 경우

④ 출자·출연 기관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따라서, 서울시는 사단법인으로 설립한 '서울시자원봉사센터'를 「지방재정법」 제17조의 '공공기관'으로 해석하고 있으나,

〈서울시 법률지원담당관 법률 자문 결과〉

서울시 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자원봉사활동 조례」 제4조에 의해 설립된 기관으로 볼 수 있는바, 이는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소관 사무로 보이므로 「지방재정법」 제17조 제2항 소정의 공공기관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조례에 출연에 대한 근거가 없는데, 출연금이 아닌 보조금 또는 민간 위탁 등의 형식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것에 대한 검토의 여지는 있다고 하겠음.
 - ※ 17개 시도의 광역 자원봉사센터의 경우 대부분“사단법인(독립)”으로 운영하고 있고, 예산은 9개 시·도는 보조금으로, 6개 시·도는 민간위탁금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서울시와 경상남도의 경우에만 출연금으로 지원하고 있음(참고1 전국 광역 자원봉사센터 운영 현황).
- 한편, 조례에 출연의 근거를 마련한다고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사단법인을 설립하여 출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법률 자문 및 법제처 질의회신 등의 법적 검토 절차를 거쳐 출연기관으로서의 명확성을 기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또한, 2006년부터 약 11여년 동안 서울시에서 출연하여 운영해 오던 동 센터가 그 기능상의 문제가 없는 상황에서 법령제정 등에 따라 출연기관으로서의 지위 상실 등의 문제가 유발되고 있음에도 행정국은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는바, 자원봉사센터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한 문제해결 등에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 가결 (재석위원 6명, 전원찬성).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자원봉사센터 출연 동의안

의안 번호	2005
----------	------

제출년월일 : 2017년 8월 14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1. 제안이유

- 가. 서울시에서는 시민이 주도하는 자원봉사 활성화와 자원봉사를 통한 공공서비스 참여 및 이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을 위하여 2006년 (사)서울특별시자원봉사센터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음
- 나. 이에 자원봉사 민관협력강화를 위한 서울특별시자원봉사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2018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서울특별시자원봉사센터 출연 여부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사전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출자·출연 개요

- 대상기관 : (사)서울특별시자원봉사센터
- 관련법령
 - (공통)법령 : 민법(제32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개별)법령 : 자원봉사활동기본법
 - 조 례 : 서울특별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 출연금액 : 2,754,878천원

나. 주요사업

- 자치구자원봉사센터 지원 및 지역단위 자원봉사 역량 제고
 - 자치구센터 지원 : 지역단위 소모임 육성·연계 및 시·구 공동협력 체계 강화
 - 지역활동 역량강화 : 지역거점 상담가 및 아파트 리더 양성·심화 교육
 - 자원봉사 관리자 및 시민리더 역량강화: 학습플랫폼 및 자원봉사 관리자 아카데미 운영
- 소통·공유·협력을 통한 자원봉사 플랫폼 구현
 - 온라인 플랫폼 운영 : 시민 눈높이에 맞는 시민 중심의 자원봉사 소통 공간 운영
 - 민간자원 연계 : 공공기관·기업·자원봉사단체 간 네트워크를 통한 활동지원
 - 자원봉사 관리·운영 기능 강화 및 지역공동체 중심의 재난안전 활동 지원

다. 출자·출연의 필요성

- 자원봉사의 체계적 발전 및 민간 주도 자원봉사활동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설립한 서울특별시자원봉사센터의 운영을 지원하고,
- 자원봉사활동의 민·관 파트너십 구축을 통하여 자원봉사활동을 범시민운동으로 승화·확산하기 위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나. 예산조치 : 2018년도 예산편성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 작성자 : 자치행정과 주민지원팀 백명철 (☎2133-5830)